

공 고 문

-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-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공고(고시)하오니 해당기간 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명 (생년월일)	주 소	발 급 기 간	비고
민**	민** (09.08.19.)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498번길 12-7	2026.09.01. ~ 2027.08.31.	
김**	김** (09.08.9.)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	2026.09.01. ~ 2027.08.31.	

-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(사진 부착)를 지참하거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,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, 동일 호적 내 가족 또는 형제·자매가 동행(신분증 지참)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의 사진 1매 (3.5X4.5) 를 제출

※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 (문의전화 :☎ 031-5191-6962)

2026년 9월 11일

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장

